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 개선

▶ 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(2015. 10. 21)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동필)는 고병원성 조 류인플루엔자(AI) 등 가금류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하여 방역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 확 대.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중 방역 및 소독 시 설ㆍ장비 기준 구체화 등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(공포 : '15.10.13, 시행 : '16.4.13, '16.10.13)하였 다고 밝혔다.
- o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(AI)가 소규모 사육농 가와 가든형 식당 등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농 가 현황파악 및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가 금류(닭 · 오리 · 거위 · 칠면조 · 메추리 · 타 조 · 꿩)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5m² 이상에서 10m² 이상으로 확대하 였다.
 - *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(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)
- 농장입구부터 축사내부까지 차량·사람·동 물 등을 통한 오염원 전파를 효율적으로 차단 하고. 적절히 소독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 기준 중 방역 및 소독 시설 · 장비 기준과 적 정사육기준을 강화하였다.

- 종계장·종오리장, 부화장, 닭(산란계, 육 계) · 오리 사육농장의 경우, 농장 방역실. 축사 전실*. 야생동물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 화 하였으며, 울타리(담장), 차량 및 방문자 소독시설 기준(붙임)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였다.
- * 전실: 기후에 관계없이 대인 · 신발 소독 등이 가능 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 하여 가축 사육공간과 구분,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
- O 닭 사육화경 개선을 위해 산란계 농장(평사*) 1제곱미터 당 적정 사육 규모를 10마리에서 9마리로 강화하였다.
 - * 평사 : 바닥에 만든 닭장
- 이 영 시행 당시 가축사육시설 면적 10m² 이 상 15m² 미만인 가금류사육농가는 '16.4.13 일까지 가축사육업 등록을 시 · 군 · 구에 등 록하고, 종계 · 종오리업, 부화업, 닭(산란계, 육계) · 오리 사육업 허가농가는 '16.10.13일 까지 방역 및 소독 시설 · 장비 기준을 갖추어 야 하다.
-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

붙임

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, 보다 효율 적으로 차단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에게 축산업 허가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 부하였다.

- 정부는 축산업 허가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 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허가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일제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- 조류인플루엔자(AI), 구제역의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연 2회 이상 해당 허가대상 농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, 규모별·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하여 내실 있는 점검을 실 시할 예정이다.
-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업을 영위할 경우 최대 200만 원*의 과태료 (축산법 제56조제1항), 축산업 허가기준을 준

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**의 과태료 (축산법 제25조제4항, 영 별표4)가 부과된다.

- * 위반 : (1회) 10만원, (2회) 50만원, (3회) 200만원
- ** 위반 : (1회) 50만원, (2회) 200만원, (3회) 300만원
-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(www.law.go.kr) 〈축산법 시행령〉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(044-201-2317, 2330)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.
- 앞으로도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 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었다.

구체적 소독 · 방역 시설 기준(우수사례 내용 포함)

구분 미흡 우수사례 농장 출입 통제 교급 최입 차량 세척/ 소독 교급

